

SI기업의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임득수

한국원가원 원장, 공인회계사, 정보처리기술사

The view point of tax system improvement for SI Industry

Lim, Deuksoo,

Korea Cost Institute, CPA, PE

E-mail : ceo@kcost.co.kr

요 약

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법은 산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산업의 특성과 발전 사이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SI 산업은 어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거래형태와 함께 이제 태동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산업에 대하여는 많은 과세상의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에서의 부가가치세법 개선방안도 있고 일반기업들에서 연성을 높이는 하소연도 있다. 설문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행 세법 등 제도와 대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본다.

(2) 연구의 방법

1)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의 결과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및 그 결과

순번	설문	응답
1	연락처	XX 기업
2	과거에 당한 세무관련 불이익	
1)	어느 세목인가	부가가치세
2)	불이익의 규모는	백만-천만이하
3)	계류중인 불이익의 내용	무응답
3	세제상 구조적 문제현안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방안. 전문가 부족
4	개선되기를 원하는 세제	인건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세제에 대한 학술대회에서의 기대	하청 많음. 전문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
6	비고	세무사 기장의뢰 있음

<본 설문의 결과 세제상 문제점>

1. 현행 매출공급가액에서 매입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그에 대해 10%를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크다. SI산업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크므로 인건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가.
2. 인건비에 대한 특별한 세액감면제도는 없는가
3. 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를 적절히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2) 기존 연구의 검토

기존 연구들은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에 관한 부분과 IT의 급진적 발전에 입각하여 이에 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등이었다.

3) SI기업에 대한 세제상 문제점

이상의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SI기업에 대한 세제상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무리없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법인세등 세제상 추가 지원가능한 범주는 없는가
3. IT의 발전에 따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은 ?

2. 현행 SI산업등에 대한 세제

(1) 사이버 거래 등에 대한 과세제도

1) 디지털콘텐츠거래관련 세법령 규정

디지털콘텐츠관련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면세재화)
7. 도서,신문,잡지,판보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적인 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법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동 제32조 제2항
법제12조제1항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④ 동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1조(전자출판물의범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함은 도서 또는 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 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문화관광부고시제199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2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의범위확정을위해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전자출판물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에서발행된전자출판물

국내출판물은 다음 표.2 각 호의기준을모두충족

<표 2> 부가가치세면세대상 국내출판물

구분	내용
가.형태	CD-ROM등유형의고체물인전자적기록매체형태로발행된전자출판물
나.내용	도서또는정기간행물의내용을구성할수있는문자그림사진도형등의정보를수록한전자출판물
다.기능	색인(index),검색(retrieval),선택(selection)등의기능을갖춘 전자출판물
라.출판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출판사에서발행한전자출판물
마.납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도서또는연속 간행물로서자료제출의무를이행한전자출판물
바.자료번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8조의규정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국제표준자료번호를부여받은전자출판물

나. 외국에서수입된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의수입추천을받은 전자출판물, 또는제1항의가,나,다 항목의기준을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3> 디지털콘텐츠의 범위 <참고자료>

분 야		정 의
교육용 콘텐츠	온라인형 학습콘텐츠	영상,음성,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이루어진 양방향 학습프로그램
	패키지형 학습콘텐츠	CD, 디스켓 등의 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
디지털 출판	디지털 서적	PC등 멀티미디어기기에서 활용되는 백과사전, 전문사전, 전자책 등 지식전달을 위한 콘텐츠
	디지털 간행물	디지털신문, 온라인매거진, 영상소설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연속출판되는 콘텐츠
컴퓨터 게임	네트워크 게임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네트워크 접속을 통한 게임
	PC게임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CD 등을 통한 PC기반 게임
디지털 영상	특수편집 영상물	방송, 영상, 광고 등에 이용될 특수 편집 영상 및 컴퓨터 그래픽 작품
	디지털 애니메이션 및 만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및 만화
	디지털 캐릭터	상품화를 목적으로 디지털화된 2,3차원 형상모델 및 성격 부여 요소모델
디지털 정보	텍스트정보 콘텐츠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텍스트형태의 전문 정보나 생활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콘텐츠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Web Cashing 등)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제도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가. 대상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나. 손금대상범위: 수입금액의 5%(기술집약적인 산업 : 영 별표4)

다. 환입 : 손금산입한 과세년도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사용분 : 3년간 균등분할 환입, 미사용분 : 일시환입)

라. 적용기간 :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2)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 10조)

가. 대상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나. 세액공제액 : MAX(,)

1. (당해과세년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100

2. 당해과세년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15/100

다. 적용기간:2003.12.31이전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별표5,6에 따르면 상기 1),2)의 적용대상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음.

동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름

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개정 2001.3.28>)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가. 대상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영위기업

나. 감면세액

법인세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금액)* 50%

다. 감면소득 :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가. 대상 : 지식기반산업중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포함

나.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다. 감면비율 : 수도권 20%, 기타지역 30%

5)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 대상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나. 세액공제액 : 투자금액의 10%(2001.9.3이후 투자분)

(3)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1. 중소기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시행령 제2조)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
- 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 이내일 것
- ③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중소기업기준) 이내일 것
- ④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대규모집단소속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⑤ 제외되는 경우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천명 이상
 -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4조)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등의 가액*20%
* 사업용자산등 : 기계장치등,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사업용자산투자금액*3%
* 사업용자산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2항,시행령제4조2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준용(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36조)-일시상각충당금 규정

* 대상자산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컴퓨터 또는 각종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등의 설비

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6)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2항)

7)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3항, 영제6조3항)

가. 대상

- ①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
- ② 한도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10

나. 요건

- ①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구매
- ②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

8)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제8조)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1년 이상 사용하던 설비 등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무상양도, 저가 양도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손금산입하고, 기증받은 중소기업은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손금산입대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등을 포함

9) 주권상장중소기업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8조2항)

(4) 현행세제의 문제점

이상의 제도적 상황을 근거로 SI산업에 대한 세제상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소재지 문제

나. 재화와 용역의 구분

다. 디지털콘텐츠 온라인과세 문제

-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의 차별적 취급

라. 각국의 입장

- 국제거래상 과세관할

마. 한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의 면세화

다만, 본고에서는 SI산업의 세제상 가장 큰 현안 문제점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과세 문제와 한계기업의 문제이므로 이에 중점을 두어 현재 재경부에서 추진중인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그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개선안

1. 현행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

1)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부가가치세를 본따 만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세입중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국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간 세목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디지털경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

①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신종용역"출현, 기업의 ERP도입에 따른 거래시스템 변화 등 시대변화에법이 따라가지 못해 국세청에서 예규, 통칙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사례 발생

② 경제시스템이 종전의 Off-line거래 등 전통거래 체제에서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납세자의 불편 해소 및 선진세제 확립

나. 감면·공제제도 및 면세·영세율 제도개선을 통한 조세중립성제고 및 Tax Base 확충

① 지나치게 넓고 과세원칙에 맞지않은 면세·영세율 제도의 운영으로 조세의 중립성 저해

② 면세·영세율 적용범위를 외국의 입법례, 면세·영세율 제도 본래의 취지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등도부가가치세 본래의 원리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함

다. 납세자 편의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①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징수권자와 매출자 위주의 규정이 많고, 신고시 첨부서류가 지나치게 많은 등 납세절차가 복잡하여 납세순응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② 이를 납세자와 선의의 매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하고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할 필요

라.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및 간이과세대상 축소를 통한 과표양성화 제고

①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정책,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구축 등으로 과세 양성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아직도 낮은 수준

②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거나 고의로 미부과하는 사업자 등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조사를 강화하며,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구분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과 과세인프라 구축의 지속적 노력 경주를 통한 과표양성화율 제고

마. 일관성·통일성·이해용이성·명확성이 제고되도록 개편

① '76.12월 제정된 이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져

- 법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어려운 용어와 인용·준용규정 등이 많아 이해하기 곤란

- 지나치게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은포괄적 조문이 많아 조세요건 명확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참고) 세법 조문수 :

부가가치세법 : 43개, 소득세법 : 198개,

법인세법 : 129개, 상속세법 : 91개 등

② 따라서 법 편제의 개편을 통하여 법체계의 일관성·통일성을 높이고,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소지를 줄이며, 법 표현을 상세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필요한 예규·통칙을 법령화하고 포괄적 위임규정을 정비할 필요 있음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화

(1) 한계기업의 경우

소규모사업의 경우 인건비대비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비율을 보면, 해당 기업의 현행 매출로는 인건비정도를 충당하고 기타 비용에 대하여만 적자를 본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볼 때 당해 기업의 인건비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액비율은 10%에 달한다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결손임에도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를 떠나 이익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기업의 적자폭을 늘려 부실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이와 동일한 경우가 과거 농장들에 대한 사료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이 부가가치세의 부담 때문에 매출을 축소 또는 과소신고 하는 폐해가 발생한다. 정부에서의 부가율이라는 통제도구로 인하여 가공매출을 이용, 매입과 매출의 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자가 누증되는 기업의 경우 이 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이연법인세나 사료의 경우와 같이 환급 또는 공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큰 부담이 되고있다. 이를 개선하면 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사업의 경우

한편,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비과세로 되어있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비영리기관이나 등록된 교육기관에 한하여 비과세하여 주는 것을 IT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정 요건을 갖춘 당 교육기관의 매출액에 대하여도 교육기관의 육성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여기서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매출을 축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일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세부담효과분석

현재 우리경제에서 과세특례적인 간이과세자가 전 사업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0%정도이다. 이들의 경제규모는 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으로 보아 10% 미만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만약 이들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할 때 이는 그대로 부가가치세 감소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있는 이들 한계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이를 양성화시킴에 따라 다른 부문에서의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한계기업 부가가치세면세로 인한 세수 효과추정

(단위 : 감세되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추정)

구 분	효 과
- 법인세 증대 효과	1-2 %
- 매출누락방지효과	1 %
- 제세공과금 납부효과	0.5 %
- 인건비 원천징수 효과	1-2 %
- 이들의 성실신고에 의한 타기업 매출 노출로 인한 세수효과	2-3 %
- 과산을 방지하고 성장유도로 인한 효과 이는 레버리지로 작용	5 %이상
계	12%이상

결국 일정한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주는 경우 적어도 세수에 네거티브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효과 추정분은 보다 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 효과는 Time Lag가 발생하여 성장레버리지효과분은 당해 조치가 있는 2-3년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세위험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다. 그 사실성 여부와 위험의 크기 등은 이 부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 판명되게 될 것이다.

4. 결어

위에 보인 개선사항은 법리와 다소 괴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근본적 발전을 위하여는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 입법화를 통하여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법리적 논리는 별도로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산업의 경우도 함께 고려되면 좋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다른 차원에서의 도약은 약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부가가치세신고실무, 임득수,세경북스, 1994
- [2]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 [3] 세법강의, 이철재, 세경사, 1999
- [4] 회계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2
- [5]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2002.5
- [6]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1998